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

제출연월일	2006. 8. .
제출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정 2005. 12. 23, 법률 제7739호)이 공포되고,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 사항을 추가하고,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기능에 신설함
(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제5호).

- 긴급복지지원사업이 '06. 3. 24일자로 시행되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기존 심의기능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별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대신하고자 기존 조례의 조문에 추가·신설함.

나.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함(안 제3조).

- 각항의 순서를 정비하고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3조제2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4항, 제7항)

다. 조의 제목에 직원을 삭제함(안 제8조).

- 각항에 직원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조의 제목에 직원을 삭제함.

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4항).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자치단체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조정이 되어 상기 규정을 삭제함.

마. 회의록 기록·작성시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함.
(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조례개정 자료통보 【도 사회장애인복지과-4515(2006.2.24)호】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타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6. 3. 20.~ 4. 10)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대표협의체”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심의·건의하거나”를 “심의·건의·의결하거나”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2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중 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중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을 “제3조제4항 및 제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중 “간사 및 직원”을 “간사”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

제10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중 “공청회 및 세미나”를 “공청회 또는 세미나”로 한다.

제14조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p> <p>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건의</u>하거나 <u>군수</u>의 자문에 응한다.</p> <p>1.~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p> <p>②(생략)</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실무협의체</u>를 둘 수 있다.</p> <p>제3조(구성) ①(생략)</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군수</u>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u>군수·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u>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p> <p>④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u>위원</u>중에서 호선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p> <p>제2조(기능) ①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건의·의결</u>하거나 <u>군수</u>의 자문에 응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p> <p>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p> <p>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 -----<u>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u>(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p> <p>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u>군수</u>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호선한다.</p> <p>③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u>위원</u> 중에서 호선한다.</p> <p>④대표협의체의 <u>위원</u>중 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군수</u>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간사 및 직원) ①~②(생략)</p> <p>제9조(회의 등) ①~③(생략) ④대표협약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약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약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약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약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의록) ①(생략) 1. ~2. (생략)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약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수당) -----거창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 -----.</p>	<p>제8조(간사) ①~②(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실무협약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약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약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회의록) ①(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약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14조(회의수당)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p>